

계양 동도센트리움 골든베이의 [무순위 청약 (예비)당첨자] 선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

■ 본 아파트는 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’ 제59조(주택의 공급계약)에 의거하여 전산검색 및 세대주/세대원 등의 기타 적격여부 확인결과에 따른 정당한 당첨자만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(예비)당첨자로 선정되신 고객께서는 아래일정에 따라 견본주택에 내방하시어 사전서류접수 후 (예비)당첨자 일정을 진행하여 부적격 사항 발견 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구분	일자	시간	장소
사전서류접수 (제출)	2022.02.18(금)	10:00 ~ 16:30	계양 동도센트리움 골든베이 견본주택 (계양구 계산동 1063-9번지)
당첨자 공급계약 체결	2022.02.21(월)	10:00 ~ 12:00	
예비당첨자 동·호 추첨 및 공급계약 체결	2022.02.21(월)	13:00 ~ 15:00	

※ 무순위 청약 (예비)당첨자는 상기 일정에 따라 자격검증을 위한 사전서류접수가 필요합니다.
(단,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상기 일정 이전 분리된 배우자의 등본 우선접수가 필요하며, 상세 일정은 추후 별도 통보예정입니다.)

■ (예비)입주대상자 사전서류 유의사항

- ※ 공급계약 이전에 사업주체가 지정한 기간 내에 견본주택에 내방하시어 계약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(신청자격, 해당지역 거주여부, 주택소유,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)
- ※ 입주자 자격확인을 위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, 계약 시 계약서류로 대체되어 사업주체에서 보관합니다.
- ※ 계약체결 이후라도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또는 부적격 사항이 발견될 경우 기체결 된 공급계약은 해지될 수 있으며, 이에 대해 사업주체, 시공사 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
- ※ 부적격 사유 발생 시 2022.02.21(월) 12:00 까지 소명완료 해야 하며, 소명 불가 또는 시간 내 소명 미완료 시 입주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.

■ (예비)당첨자 공급계약 유의사항

- ※ 무순위 청약 접수 후 당첨자로 선정 된 경우 계약 유무와 상관없이 전산 관리되며 향후 7년간 재당첨 제한에 해당됩니다.
- ※ 무순위 청약 당첨자 우선 계약체결 권한이 주어지며, 잔여세대 발생 시 예비당첨자 “예비순번 1번” 부터 동·호 추첨 권한이 주어집니다.
- ※ 예비당첨자의 경우 동·호 추첨 시 계약 유무와 상관없이 전산 관리되며 향후 7년간 재당첨 제한에 해당됩니다.
- ※ 예비당첨자 동·호 추첨에는 반드시 예비당첨자 본인이 추첨하여야 합니다.
- ※ 동·호 추첨일에 입주자로 선정된 예비입주자께서는 당일 계약금(분양대금 10%)을 완납 후 공급계약을 진행하므로,이체한도 증액 등 계약금 입금에 지장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[견본주택 내에서 계약금(현금 또는 수표) 수납불가, 신용카드 결제 불가]

■ 자격검증 및 공급계약 구비서류 안내

구분	서류유형	해당서류	발급기준	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공통서류	필수	개인정보활용동의서	-	• 견본주택 비치
	필수	무주택서약서	-	• 견본주택 비치
	필수	신분증(사본)	본인	•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
	필수	인감증명서	본인	• 용도 : 주택공급 신청용, 본인발급용만 인정 (본인 계약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)
	필수	인감도장	본인	•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하는 경우 생략
	필수	주민등록표등본	본인	•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	필수	주민등록표초본	본인	•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 사항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	필수	가족관계증명서	본인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포함하여 “상세” 로 발급
	필수	혼인관계증명서	본인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포함하여 “상세” 로 발급
	필수	출입국사실증명원	본인	•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거주지 제한이 있는 경우 제4조 제6항에 따른 국내 거주유무 및 거주 기간 판단이 필요한 경우 ※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~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“Y” 로 설정하여 발급
해당자	주민등록표등본	배우자	•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(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) -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과거주소변동사항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등 “전체포함” 으로 발급	
해외근무자 (단신부임)	필수	해외체류 증빙서류	본인	•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•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- 파견 및 출장명령서 •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-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,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• 근로자가 아닌 경우 아래 사항 반드시 제출 -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※ 유학, 연수, 관광,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,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안됨
	해당자	체류국가 확인이 가능한 여권사본	본인 및 세대원	•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※ 비자발급내역,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, 세대원이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(계속하여 90일, 연간 183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)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안됨 • 여권 발급 경력이 전혀 없는 세대원의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원 제출
부적격 통보를 받은자	해당자	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	해당주택	•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•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• 소형·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(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) •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	해당자	당첨사실 소명서류	해당주택	•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
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	필수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당첨자	• 용도 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, 본인발급용만 인정
	필수	위임장	당첨자	• 당첨자의 인감도장 날인 필요, 견본주택 비치
	필수	대리인 신분증, 인장	대리인	•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

■ 문의전화 : 032-555-0125 (운영시간 10:00 ~ 16:30)

